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9 발의연월일: 2020. 7. 10.

발 의 자: 구자근·김용판·김석기

박성민 · 윤상현 · 최형두

정희용 · 강기윤 · 김태흠

윤두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, 3천억 원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%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미국, 프랑스 등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유행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매출 감소, 미·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.

이에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,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5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세표준	세율	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
2억원 초과	2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)	
200억원 이하	2선단전 + (4억전글 소파야근 급액의 100군의 18)	
200억원 초과	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세율) ① 내국법인의 각	제55조(세율) ①
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	
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	
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	
계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	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	
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	
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	
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	
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	
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	
다. 이하 "산출세액"이라 한다)	
을 그 세액으로 한다.	
과세표준 세율	과세표준 세율
<u>2억원 이하</u> <u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u> 2처만원 + (2억원음	<u>2억원 이하</u> <u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u>

과세표준	<u>세율</u>
<u> 2억원 이하</u>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
200 구천 기이	<u>100분의 20)</u>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
3천억원 초과	655억8천만원 +(3천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5)

과세표준	세율
<u>2억원 이하</u>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2억원 초과	2천만원 + (2억원을
200억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
	<u>100분의 18)</u>
	39억8천만원 +
200억원 초과	(200억원을 초과하는
	<u>금액의 100분의 20)</u>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